

부산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139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458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13966 판결

###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김재인, 정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성근, 최서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협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2. 2. 17.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30. 접수 제42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1) D은행, E은행, F, G는 C에게 카드대출을 하여 주었고, 2003. 10. 24. H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카드대출금채권과 그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3. 10. 24. H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한 카드대출금 채권 원금 합계 20,407,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2.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하고, 피고나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전7430호)을 신청하여 2017. 4. 5.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7. 6. 6. 공시송달되어 2017. 6.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이행

1) 그 후 C의 아버지인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9. 7. 1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J, K, C,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J, K, C,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7,400만 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 상당)에 관한 4분의 1 지분 권리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동래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1) C의 무자력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금액이 있었으므로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인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경 어머니인 L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2018. 7.경에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인 망인이 부담해야 할 부양 및 병원비 등을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혼자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2019. 7. 12. 사망할 때까지 공동상속인 4명 중 피고 혼자서 망인을 부양하였는바,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을 제4~11, 13~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혼자 L과 망인에 대한 부양료 및 병원비, 생활비 등을 자신의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부담하였고,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2001년 경에 발생하여 원금은 소액이었으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 7,900만 원 가량이 되었고, C은 2001. 이후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로서는 C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은 가족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빌라

[도로명주소] 부산 동래구 O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12.02㎡ 2층 145.76㎡

3층 145.76㎡ 4층 128.30㎡

지하 48.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동래구 M 대 351.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P호

철근콘크리트조 53.6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5180분의 3999. 끝.

